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특례(추가) 및 집행요령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129(2019.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통보한 선금집행 특례의 추가·변경사항 및 집행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특례(추가) 및 집행요령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관과01-165, 서사01-4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정담당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지영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11/11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3617 (2019.11.11.) 접수 주차계획과-14937 (2019.11.12.)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전화 02-2133-5285 /전송 02-2133-0704 / esther@seoul.go.kr / 대시민공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특례(추가) 및 집행요령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38(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통보한 선금집행 특례의 추가·변경사항 및 집행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 및 교육청에서는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특례(추가) 및 집행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재정혁신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담당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전문임기제 나급 **예병찬** 행정사무관 **최교신** 회계제도과장 전결 11/11 **김종범**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6129 (2019.11.11.) 접수 예산담당관-13594 (2019.11.11.)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82 / 전송 044-204-8967 / ybchanya95@mail.go.kr / 대시민공개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특례(추가) 및 집행요령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특례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현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 계약의 선금은 <u>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u> (특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 계약의 선금은 <u>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u>	'19.12.31. (지급일기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현행)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특례)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 금액을 포함한 <u>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u>	'19.12.31. (지급일기준)
	선금 지급조건	(현행) 2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가능 (특례) 2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u>선금지급 비율에 관계없이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가능</u>	'19.12.31. (지급일기준)
	기존특례 변경	(기존특례) - 의무지급률 : 의무지급률을 각 10% 상향 - 최대지급률 : 계약금액의 80%로 상향 - 적용시한 : '19.11.30.까지 요청한 선금지급분 (변경 특례) - 의무지급률과 최대지급률은 동일 - 적용시한 : '19.12.20.까지 요청한 선금지급분	'19.12.31. (지급일기준)
집행요령	사고이월시 선금 반환	○ 사고이월이 되어도 지급한 <u>선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u>	예규 개정('16.11.)
	선금 2회 이상 지급	○ 선금 지급 후 의무 및 최대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u>추가 선금지급 가능</u>	유권해석 통보('16.6.)
	기성금 지급 후 선금지급	○ 신속집행의 경우 기성금 지급 후 의무 및 최대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u>선금지급 가능</u>	문서 통보('16.3.)
	계약심사 생략	○ 투자심사, 일상감사 등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연계운영 등 <u>생략 가능</u>	계약심사 운영요령